

의안번호	제798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5일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안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8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5일

발의자 : 안지윤, 최정훈, 김국기,
박재주,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1. 제안이유

-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도와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업무의 효율적, 체계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
-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나. 관련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사이버공격·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보안”이란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사이버공간과 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 및 그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기업
 -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 예방·대응, 사이버보안 기반 조성 등 사이버보안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포함하는 사이버보안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실태 조사)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사이버공격·위협 대응조치)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원인분석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대응,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이버공격·위협 관련 악성프로그램의 제공 요청, 삭제 또는 차단
2. 사이버공격·위협 관련 정보의 공유 및 공개
3. 보안취약점의 차단 및 피해확산 방지 조치
4. 그 밖에 사이버공격·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서 발생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①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도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중 도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 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사이버보안 실태 점검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이버공격·위협 및 예방·대응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통보 받은 경우 그 보완대책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보완대책 이행을 위해 도지사에게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 인력 양성
2. 사이버보안 관련 산업 육성
3. 사이버보안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이버보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협회는 제외한다.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립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비용추계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1호

○ 사 유

- 본 제정조례안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며 해당 조례안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